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(안)
(서대문구 홍은동 산1-549 일대)

의안번호	76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- 안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(안)
- 입안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공 원	소공원	서대문구 홍은동 산1-549일대	-	증)747	747		

3. 입안사유

- 홍은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(제3구역) 인접지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(’07.9.12) 동 부지를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 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원) 로 결정 후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민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 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함.

4. 도시관리계획 사항

- 자연녹지지역, 개발제한구역

5. 의견청취 결과

- 주민의견 열람공고
 - 열람공고기간 : 2007.11.24~12.8(14일간, 서울신문, 한국경제신문)
 - 의견청취 장소 : 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
 - 의견청취 결과 : 의견 없음
- 구 의회 의견청취 결과 : 원안 동의(2008.9.29)
-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: 원안 가결(2008.10.16)

6. 관련부서 검토의견

제출부서	제출의견	조치계획(결과)	비고
서울시 자연생태과	행위허가 발생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	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후 사업인가 전 조치예정	반영
서대문구 치수방재과	자연지형을 유지하면서 개발	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개발예정	반영

7.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

- 무허가 노후불량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원 조성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8. 재원조달방안 : 1,740백만원(홍은 3주택 재개발조합 부담)

9. 편입토지 및 저축건물 현황

- 토지현황 : 3필지 747㎡
 - 국유지 : 1필지 35㎡(4.68%)
 - 사유지 : 1필지153㎡(20.49%)

410 (제 213회-제 2차)

- 사유지 : 1필지 559㎡ (74.83%)
 - 건물현황 : 2동(무허가 건축물)
-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